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566호 2018. 07. 26.(목)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131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-2
- 사천시 고시 제133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-----3
- 사천시 고시 제134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-----5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7 / FAX 831-6012

사 천 시 공 보

제566호(2)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 2018 - 131 호

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8. 7. 26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허가번호(허가일자) : 제2018-2호 (2018. 7. 2.)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·주소
 - 성 명 : 최 형 옥
 - 주 소 :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1길
3. 공사 내용
 - 새우양식장 해수인입을 위한 유입관 설치(P.V.C 75m/m, 2식)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-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3-13번지 외 2필지선 (3-11, 3-12)
5.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
 - 2018. 7. 18.

사 천 시 공 보

제566호(3)

사천시 고시 제 2018 - 133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

『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8. 7. 26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허가번호(허가일자) : 제2018-3호 (2018. 7. 18.)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성 명 : 최 종 명
 - 주 소 : 경남 고성군 삼산면 공룡로 2976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- 새우양식장 해수인입을 위한 급수 및 배수관로 설치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19-76, 119-101번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
 - 신고번호 : 제2018-5호
 - 공사기간 : 2018. 7. 26. ~ 2018. 7. 31.

사 천 시 공 보

제566호(4)

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: 2018. 7. 20.

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

- 점용·사용 허가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-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566호(5)

사천시 고시 제2018 - 134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8. 7. 26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18 - 03호
2. 점용·사용 승인 연월일 : 2018년 7월 23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- 기존 현황도로의 공유수면 점·사용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584번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528㎡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18년 7월 23일 ~ 2048년 7월 22일(30년)
7.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우주항공과장)
 - 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